

고용유지지원금 대상사업주 자가진단리스트

□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, 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.

* **휴업:** 경기변동, 기타 경영상의장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(부분휴업, 기업전체 휴업 가능)

* **휴직:**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

□ 고용유지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고 해당부분(예, 아니오)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
번호	지원요건	예	아니오
1	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해당합니다. (※1~8호 중 반드시 하나에 해당할 것) (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(기준달)의) 1.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% 이상 증가한 사업주 2.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,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 대비 15%이상 감소 3.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,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%이상 감소 4.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매출액이 기준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감소 추세 5. 사업의 일부부서의 폐지,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의 축소조정을 행한 경우 6. 자동차 등 인원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의 설치, 작업형태 또는 생산방식의 변경이 있는 경우 7.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%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%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의 사업주 8. 당해 업종,지역경제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주 * '코로나19'로 인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예약취소, 이용객 감소, 원자재 수급차질 입증자료, 학원 등 휴업 권고문 등 증빙자료 첨부 필요 ※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. (ex. 1~7호까지는 국제형 매출자료,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손익계산서, 납세증명서, 세금계산서 등)		
2	휴업월(1월~말월)의 총근로시간 감소율이 기준기간(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의 기간) 대비 20/100을 초과하여 휴업(근로시간 조정, 교대제 개편, 휴업 등)을 행하거나, 고용유지대상자가 1개월 이상 연속하여 휴직을 할 계획입니다. * 근로시간 단축을 계산시, 사업단위(법인일 경우 법인단위)로 산정함(사업장 단위 아님). * '20.2월이 휴업월인 경우 기준기간은 '19.8월~'19.10월(3개월 합계 평균)까지임		
3	고용유지조치 계획 수립 시 노동조합 혹은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했습니다. *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과 협의 *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협의		
4	고용유지조치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이며, 1월 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가 아닙니다.		
5	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근로자를 이직(권고사직, 경영상해고 등)시킬 계획이 없습니다. *「근로기준법」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의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가 없을 것. *감원방지의무를 위한 경우에는 부지급하며, 기지급된 지원금은 부당이득으로 환수조치함.		
6	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(상용직, 일용직 등)을 할 계획이 없습니다		
7	고용유지조치 실시 전 고용센터(고용복지+센터)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*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전일까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. *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실시한 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.		
8	고용유지조치 대상 근로자에게 휴업(휴직)수당(통상임금의 100% 또는 평균임금의 70%이상)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		
9	전자적·기계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근태관리(출·퇴근기록)를 하고 있습니다. (ex, 전자카드, 지문인식, 타임레코드 등)		

※ 위 문항에 "예" 표시한 경우, 평택고용센터 홈페이지 정보마당-서식자료실, '고용유지조치계획서' 작성, 제출

* 방문 및 우편 제출, 온라인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

* 신청 절차: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⇒ 고용유지조치(휴업 또는 휴직) 실시 ⇒ 근로자에게 휴업(휴직)수당 지급 ⇒ 지원금 신청